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66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11. 19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('25. 1. 1.)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소관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반영(안 제3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2항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,  
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라.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“도시환경국”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나.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# 다.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건설위원회 가. ~ 다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라. ~ 아. (생략)</p> <p>3. 복지도시위원회 가. (생략)</p> <p>나. &lt;삭제&gt; <u>&lt;신설&gt;</u> <u>도시환경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다.·라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마. ~ 자. (현행 라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)</p> <p>3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다. <u>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라.·마. (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철호
연 락 처	02-3153-6175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**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**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 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 다만,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 3. 29.>

**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 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0., 2024. 3. 29.>